

November 01, 2019

Legal Update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제정안 국회 본회의 의결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이하 “P2P금융업”)에 대한 명확한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이와 관련된 진입 제도, 영업행위 규제,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등의 구체적인 내용을 담은 「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 및 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 2019. 10. 31.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였습니다. 이는 세계 최초로 P2P(Peer to Peer) 금융의 근거 법률을 마련한 것으로, 이하에서는 본건 법률의 주요내용을 간략하게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온라인투자연계금융(이하 “P2P금융”)의 정의

- P2P금융이란, 온라인플랫폼을 통하여 특정 차입자에게 자금을 제공할 목적으로 투자(이하 “연계투자”)한 투자자의 자금을 투자자가 지정한 차입자에게 대출(어음할인·양도담보, 그 밖에 이와 비슷한 방법을 통한 자금의 제공을 포함. 이하 “연계대출”)하고 그 연계대출에 따른 원리금수취권을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것을 의미합니다(법 제2조 제1호).

P2P금융업에 대한 진입제도

- P2P금융업을 하려는 회사는 상법에 따른 주식회사로서, 최소 자기자본(5억원 이상으로 시행령 규정)과 인적·물적 설비를 갖추고, 사업계획의 타당성, 이해상충방지체계, 임원·대주주의 자격, 사회적 신용

등의 등록 요건을 갖추어 금융위에 등록하여야 합니다(법 제5조 제1항).

- 금융위는 등록신청서 접수시 그 내용을 검토하여 2개월 이내에 등록 여부를 결정합니다(법 제5조 제2항, 제3항).

P2P금융업자의 영업행위 규제

P2P금융업자에게 적용되는 영업행위 규제의 대략적인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 거래구조, 재무·경영현황, 대출규모, 차입자의 상환능력평가 체계, 연체율, 대출이자, 수수료 등 부대비용, 상환방식, 원리금 회수 방식 등에 관한 사항의 공시의무(법 제10조 제1항)
- 대부업법 상 최고금리(24%) 범위 내에서 이자(차입자로부터 수취하는 수수료 포함)를 수취하여야 함(법 제11조 제2항)
- (i) 자신 또는 대주주 등에게 연계대출을 하는 행위, (ii) 투자자 모집 전 연계대출을 실행하는 행위, (iii) 연계투자자와 이에 대한 연계대출의 만기, 금리 등을 다르게 하는 행위 등의 금지(법 제12조 제1항, 제2항 및 제7항)

다만, 연계대출 금액의 80% 이하로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상 모집시 자기자본 범위 내에서 연계대출 모집 미달 금액에 대해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 가능(법 제12조 제4항).

투자자·차입자 보호 제도

- (차입자 및 투자자 정보 확인) P2P금융업자는 차입자의 소득·재산 및 부채상황 등에 관한 사항을 확인하고, 차입자의 객관적인 변제능력을 초과하는 연계대출을 실행하여서는 안됩니다(법 제20조). 또한, 투자자가 연계투자를 하려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본인 확인을 시행해야 하며, 이용계약에 따라 투자자의 소득·재산 및 투자경험 등과 관련된 정보의 제공을 투자자에게 요구할 수 있습니다(법 제21조).
- (투자자의 보호) 본건 법률은 투자자의 합리적인 투자 판단 및 투자자금 보호를 위한 준수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P2P금융업자는 연계대출 정보, 차입자 정보, 연계투자자에 따른 위험, 수수료, 세율, 연계투자 수익률·순수익률 및 투자자가 수취할 수 있는 예상 수익률, 채권추심 절차 등을 투자자에게 제공해야 합니다(법 제22조).

P2P금융업자는 투자금 및 상환금을 자신의 고유재산 및 자기의 계산으로 연계투자한 자금과 구분하여 은행 등 예치기관에 예치 또는 신탁하여야 합니다(법 제26조).

또한, P2P금융업자가 파산하거나 회생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연계대출채권은 P2P금융업자의 파산재단 또는 회생절차의 관리인이 관리 및 처분권한을 가지는 채무자의 재산을 구성하지 하는 등, P2P금융업자의 도산과 절연하도록 되어 있습니다(법 제28조).

-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본건 법률은 P2P금융의 이용 한도 규제를 두고 있습니다.

P2P금융업자는 동일 차입자에 대해 자신의 연계대출 채권 잔액의 10% 범위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해서는 연계대출을 할 수 없습니다(법 제32조 제1항).

또한, 투자자는 투자목적, 재산상황 및 차입자의 특성 등을 고려하여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 이내에서만 연계투자할 수 있습니다(법 제32조 제2항).

기타 투자와 관련된 사항

- (금융기관 등의 투자참여) 대부업법 제2조 제4호의 여신금융기관과 그 밖에 시행령으로 정하는 자(온라인투자연계금융업자는 제외)는 연계대출 모집 금액의 40% 이내에서 시행령으로 정하는 한도를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연계투자를 할 수 있습니다(법 제35조).

감독 및 검사

- 본건 법률은 금융위 및 금감원에게 P2P금융업자에 대하여 감독, 검사 및 제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하고 있으며, P2P금융업자에게 금융위 및 금감원의 요청에 따라 업무보고서 등 자료를 제출할 의무를 부과하고 있습니다(법 제43조 및 제54조).

경과규정

- 본건 법률은 공포(2019. 11. 중 예정) 후 9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됩니다(본건 법률 부칙 제1조).
- 대부업법 제3조 제2항 제6호에 따른 온라인연계대부업체 등 기존에 본건 법률상의 P2P금융업과 유사한 업무를 영위하던 자는 본건 법률 공포 후 7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P2P금융업의 등록을 신청할 수 있으며, 본건 법률 공포 후 1년 이내에는 P2P금융업 등록을 완료하여야만 합니다(본건 법률 부칙 제3조 및 제4조).

하위법규 입법 예상 일정

- 금융위는 2020. 6. 까지 하위법규를 공포하겠다는 계획입니다.
- 하위법규에서는 등록요건으로서 최소 자본금, P2P금융업자의 자기자본 투자 요건, P2P금융업자의 업무 및 위탁 불가능 업무의 범위, 광고 준수사항, 대출한도 및 투자한도, 금융기관 등의 연계투자 참여 범위 등이 주요하게 결정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본법은 대부업법 이후 새로운 금융업을 창출한 최초의 법률로, 그 동안 가이드라인 등 비법률적인 행정지도에 따라 이루어지던 P2P 금융에 대한 규제를 세계 최초의 입법을 통해 양성화하였다는 큰 의의가 있습니다. 본법의 제정으로 인하여 다양한 P2P업체들의 서비스가 더욱 체계화, 고도화되어 핀테크 발전에 기여할 것으로 예상되며, P2P 금융 이용자들에 대한 보호도 더욱 강화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법무법인 세종의 디지털 기술 및 데이터법 그룹(Digital Technology & Data Law PG은) 핀테크, 인공지능, 데이터 독점, 자율주행자동차 및 블록체인 등 디지털 기술과 데이터를 다루는 기업들에게 전문적이고 융합적인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면 아래 연락처로 문의하여 주시면 보다 자세한 내용을 상담하여 드리겠습니다.

Contacts



조정희
파트너변호사

☎ 02-316-1624

✉ jhcho@shinkim.com



엄상연
파트너변호사

☎ 02-316-4677

✉ syeom@shinkim.com



황현일
소속변호사

☎ 02-316-4453

✉ hihwang@shinkim.com



오재청
소속변호사

☎ 02-316-1782

✉ jcoh@shinkim.com



김병인
소속변호사

☎ 02-316-1572

✉ bikim@shinkim.com

SHIN&KIM | 법무법인 세종

법무법인 세종 뉴스레터의 게재된 내용 및 의견은 일반적인 정보 제공 목적으로 발행된 것이며, 어떤 구체적 사안에 대한 법률적 의견을 드리는 것이 아님을 밝힙니다.

The content and opinions expressed within Shin & Kim's newsletter are provided for general informational purposes only and should not be considered as rendering of legal advice for any specific matter.